



일련번호	
------	--

제17회 노인의 날 기념  
**『2013 건강걷기대회 및 가족문화축제』**  
 협찬, 광고 및 홍보부스 참가 신청서

■ 신청인			
회사명		사업자(주민)번호	
업태		업종	
대표자명		휴대번호	( ) -
담당자		전화번호	( ) -
직위(직책)		팩스번호	( ) -
홈페이지		이메일주소	
주소			

■ 신청내용				
종류	항목 ( √ )	기준	신청금액	
1 대회협찬	메인협찬 <input type="checkbox"/>	50,000,000원	일금( ) 원	계약금 : 30% 잔금 : 내용확인후
	일반협찬 <input type="checkbox"/>	5,000,000원	일금( ) 원	
2 홍보부스참가	부스참가 <input type="checkbox"/>	500,000원	일금( ) 원	계약시 완납
	부스전시품목			
3 안내책자광고	표지 2 <input type="checkbox"/>	1,000,000원	일금( ) 원	계약금 : 30% 잔금 : 책자완료 및 게재확인 후
	표지 3 <input type="checkbox"/>	1,000,000원	일금( ) 원	
	표지 4 <input type="checkbox"/>	3,000,000원	일금( ) 원	
	목차 전 <input type="checkbox"/>	800,000원	일금( ) 원	
	내지 <input type="checkbox"/>	500,000원	일금( ) 원	
합계			원	
4 납입방법	계약, 완납금	월 일		
	잔금	월 일		
5 납입계좌번호	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/ <u>외환</u> 은행 / 계좌번호 ( 630-008660-527 )			

※ 첨부서류 : 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주최 측의 행사 참가규정을 수락하고 상기와 같이 행사 참가를 신청합니다.

2013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, 인)

##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귀중

※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은 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, 「소득세법」 제34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·제88조의4 및 「법인세법」 제24조에 따라 상기 기부금에 대하여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.



## 참가계약서

### 제1조 [용어의 정의]

“행사”라 함은 『제17회 노인의 날 기념, 2013 건강걷기대회 및 가족문화축제』를 말한다. “참가자”라 함은 본 행사에 협찬 및 홍보부스, 안내책자광고로 참가한 주체로서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및 단체를 말한다. “주최자”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을 말한다.

### 제2조 [전시 홍보부스 배정]

주최자는 신청순서, 계약금 납입순서, 참가규모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, 행사장 내 각 참가자의 위치를 배정한다. (홍보부스는 3X3 몽골 텐트형 으로 한다)

### 제3조 [계약, 신청 및 참가비 납부 절차]

참가신청서 및 계약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비는 참가신청서에 작성된 납부방법과 날짜에 의거하여 납부한다.

### 제4조 [설치 및 철거]

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홍보부스 참가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관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 [보안 및 안전]

홍보부스 참가자는 행사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홍보물품에 대하여 자체 관리해야 하며 도난, 파손,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가 부담한다.

### 제6조 [홍보 전시품 제한]

참가자는 참가신청 및 계약서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해야 하고 주최자는 전시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행사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.

### 제7조 [참가신청 해지]

참가자가 신청한 홍보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### 제8조 [전시 홍보부스 변경]

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### 제9조 [보충규정]

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



**제10조 [분쟁해결]**

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서울 민사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2013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주최자		참가자	
단체(회사)명	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	단체(회사)명	
대표자명	김 용 문 (인)	대표자명	(인)
사업자번호	107-82-10282	사업자번호	
주소	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, 1028호 (진미파라곤)	주소	
연락번호	1661-9988	연락번호	

